

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박선미 의원

제출일 : 2025. 8.

1. 제안이유

재향경우회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봉사, 치안 활동, 공익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활동을 위해,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사업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마.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원

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,
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

■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[시행 2020. 7. 1.] [법률 제17167호, 2020. 3. 31., 일부개정]

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 5. 30.>

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5조(조직)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

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

<개정 2011. 5. 30.>

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1. 5. 30.>

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

<개정 2011. 5. 30.,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5조(재정)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<개정 2011. 5. 30.>

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<개정 2020. 3. 31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<신설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